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안 (안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0**

발의연월일: 2021. 3. 11.

발 의 자 : 안영호, 김지근,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박경흠,

김기환, 박채연

1. 제정이유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제작·배부 (안 제1조~제2조)

나. 규격 및 종류, 배부대상, 게재사항 (안 제3조~제5조)

다 배부방법. 시행규칙 (안 제6조~제7조)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22조

나. 「사회보장기본법」제36조

다. 「관광기본법」제2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 하여 달력 제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작·배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 달력(이하"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3조(규격 및 종류) ①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벽걸이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
 - ② 달력의 규격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배부대상) 달력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2.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 3. 중구 산하 단체, 마을회관, 경로당 및 중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 4.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 5. 관내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 6.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복지·세무·관광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단체 및 관련업체
- 제5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4 (제234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 1. 울산광역시 중구 로고와 구정목표
- 2. 행정·복지·세무·관광 정보
- 3. 울산큰애기 캐릭터 및 활동사항
 - 4. 축제 · 행사 등 안내사항
 - 5. 그 밖에 구민이 알아야 할 주민편의 행정 정보에 관한 사항
- 제6조(배부방법) 구청장은 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 법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6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관광기본법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1.]